사기·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·전자금융

거래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12. 2015고단2039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권기환(기소), 정우준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정원일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압수된 증 제1, 2호를 각 몰수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.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.

【이유】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[이유]

]